

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9] <신설 2026. 5. 29.>

2026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호	소호				
0207		제0105호의 가금(家禽)류의 육과 식용 설육(胛肉)(신선한 것,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207	1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(Gallus domesticus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			
0207	12	*절단하지 않은 육(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)		0	
0207	14	절단육과 설육(胛肉)(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30,000톤
		*1. 절단육		0	
		2. 설육(胛肉)			
		*나. 기타		0	
1602		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·설육(胛肉)·피·곤충			
1602	3	가금류(家禽類)로 만든 것(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)			
1602	32	*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(Gallus domesticus)종의 것	삼계탕 이외의 것	0	

		로 한정한다]으로 만든 것			
--	--	----------------	--	--	--

비고: 품명란에 “*” 표시된 품목은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을 말한다.